

#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933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25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4. 5.27
-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- 회부일자 : 2024. 5.30
- 상정일자 :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6. 20.)
  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4. 6. 24.)
    - 수정안가결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태균)

- 의안번호 제19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(안) 등 9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으로,
-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변경안 등 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을 회수하는 등 재무활동 조정으로 인한 2024년도 수입·지출계획의 변경으로, 총 853억 원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증액되었음
-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6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에, 행정운영경비에서 16백만 원을 감액하고, 정책사업 37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##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933호, **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# 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# 가. 제안이유

- 1)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\*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\*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1).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여유재원 172억 14백만원을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

※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2.7% 변경

- 2). 운용규모 : 932억 7백만원 (당초계획 대비 172억 14백만원 증가)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수입계획 : 17,214백만원 증가 (75,993백만원 → 93,207백만원)

※ 전입금 : 17,214백만원 증가 (0 → 17,214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과 목		당초금액	변경금액	증감액	비율(%)
장	관 - 항 - 목	(A)	(B)	(C=B-A)	(D=C/A)
합 계		75,993	93,207	17,214	22.7%
200	세외수입	2,700	2,700	-	-
	210 경상적세외수입	2,700	2,700	-	-
	216 이자수입	2,700	2,700	-	-
	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2,700	2,700	-	-
700	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73,293	73,293	-	-
	710 보전수입등	73,293	73,293	-	-
	714 예치금회수	73,293	73,293	-	-
	714-01 예치금회수	73,293	73,293	-	-
	720 내부거래	-	17,214	17,214	100.0%
	721 전입금	-	17,214	17,214	100.0%
	721-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	-	17,214	17,214	100.0%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지출계획 : 17,214백만원 증가 (75,993백만원 → 93,207백만원)

※ 예치금 : 17,214백만원 증가 (75,993백만원 → 93,207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과 목		당초금액	변경금액	증감액	비율(%)
정	책 - 단 위 - 세 부 - 편 성 목	(A)	(B)	(C=B-A)	(D=C/A)
합 계		75,993	93,207	17,214	22.7%
재무활동(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)		75,993	93,207	17,214	22.7%
	보전지출(하수도사업회전기금)	75,993	93,207	17,214	22.7%
	예치금	75,993	93,207	17,214	22.7%
	602 예치금	75,993	93,207	17,214	22.7%

### 3. 검토의견

-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」의 지출예산서중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 172억 1,400만원을 편성요청됨에 따라 동 기금도 수입계획중 172억 1,400만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하고, 이와 연동한 지출계획도 172억 1,400만원을 증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지난 5월 27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, 지출예산중 기금전출금 172억 1,4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,
  - 동 기금의 수입계획의 경우에도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72억 1,400만원을 편성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172억 1,4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1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
  -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)**을 당초 지출계획(759억 9,300만원)보다 22.7%, 172억 1,4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으로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### 〈표 3-1〉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 A 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 B )	증 감 ( C=B-A )	증 감 륜 ( D=C/A )
지출합계	75,993	93,207	17,214	22.7
재 무 활 동 ( 물 순 환 안 전 국 물 재 생 계 획 과 )	75,993	93,207	17,214	22.7
보 전 지 출 ( 하 수 도 사 업 회 전 기 금 )	75,993	93,207	17,214	22.7
예 치 금	75,993	93,207	17,214	22.7

※ 자료근거 :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계획,  
 ②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4. 5.27) 재구성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<sup>2)</sup>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예산중 기금전출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어 추경예산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·지출 계획도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2) 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(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.

1.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(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한정한다)
2.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
3. 기금 증식을 위한 용자 및 출자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 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## 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###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 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#### 가. 소위원회

##### ○ 위원구성 :

- 위 원 장 : 이병도(도시계획균형)
- 부위원장 : 신복자(기획경제), 박승진(주택공간)
- 소위원회 : 구미경(행정자치), 박수빈(행정자치)  
김재진(환경수자원), 김규남(문화체육관광)  
유만희(보건복지), 김 경(보건복지)  
이상욱(도시안전건설), 신동원(주택공간)  
박영한(도시계획균형), 이경숙(교통)  
정지웅(교육), 전병주(교육)

※ '24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

## 나.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

### 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1(금) 15:00 ~ 18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# 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2(토) 14:30 ~ 18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# ○ 제3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3(일) 15:00 ~ 2024. 6.24(월) 0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 VII. 부대의결 : 「해당 없음」

## VII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 (2024. 6.24)



#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33
----------	------------

2024년 6월 24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1. 수정 이유

「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하여,  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## 2. 수정 주요 내용

「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하여  
별첨과 같이 수정·의결한다.

◇ 첨부 :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 
변경안 수정안 1부. 끝.

#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

## □ 세부 수정내역

### ○ 하수도사업회전기금

#### -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과 목		당초 계획안	예비심사 결과			수정 운용계획안
장	관 - 항 - 목		계	증액	감액	
합 계		93,207	△1,613	-	△1,613	91,594
200	세외수입	2,700	-	-	-	2,700
	210 경상적세외수입	2,700	-	-	-	2,700
	216 이자수입	2,700	-	-	-	2,700
	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2,700	-	-	-	2,700
700	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90,507	△1,613	-	△1,613	88,894
	710 보전수입등	73,293	-	-	-	73,293
	714 예치금회수	73,293	-	-	-	73,293
	714-01 예치금회수	73,293	-	-	-	73,293
	720 내부거래	17,214	△1,613	-	△1,613	15,601
	721 전입금	17,214	△1,613	-	△1,613	15,601
	721-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	17,214	△1,613	-	△1,613	15,601

#### -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과 목			당초 계획안	예비심사 결과			수정 운용계획안
정책 사업	세부 사업	편성목		계	증액	감액	
합 계			93,207	△1,613	-	△1,613	91,594
재무활동 (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)			93,207	△1,613	-	△1,613	91,594
	예치금		93,207	△1,613	-	△1,613	91,594
	602 예치금		93,207	△1,613	-	△1,613	91,594